

제 7 장 사무부서

제 39 조(사무국) ①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본 협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.

②사무국에 사무국장 1 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.

③사무국장은 이사회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.

④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.